

의안 검토 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7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학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7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7. 8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7. 10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 (안 제2조)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나.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음.(안 제2조, 단서)

다.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함. (안 제2조, 단서)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정무부시장에 대하여 그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은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와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와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하였음.

이와함께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하였으며, 근무상한 연령 역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였음.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정무직부시장에 대한 그 자격등을 정한 것이라 하겠

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경험이나 경력등을 중시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끈다는 취지라 보겠음.

다만, 자격범위에 있어서 공직경험자나 선거에 의한 선출자외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도 포함되도록 한바,
그 범위면에서 너무 포괄적이라고도 사료되나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이나 상한년령에 관하여는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점
차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